

방통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 종이 없는 심사제 도입,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 공개 등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하였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 방법으로 추가하여 배점을 확대(90점→120점)하였다.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 UHD, FM, AM, DMB),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허가 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종이 없는(paper less) 심사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능력과 지역방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무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요약.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2-2110-1420)
		담당자	사무관	왕경희 (02-2110-1421)



□ **2023년도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

구분	구분	매체구분						합계
		UHD	DTV	FM	표준FM	AM	DMB	
UHD /DTV /DMB /라디오 (23개사)	한국방송공사	2	1					3
	(주)문화방송	1						1
	(주)에스비에스	1	1					2
	대구문화방송(주)	1	1	2				4
	광주문화방송(주)	1	1	1	1	1		5
	전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제주문화방송(주)		1	2				3
	춘천문화방송(주)		1	2				3
	울산문화방송(주)	1	1	2				4
	목포문화방송(주)		1	2				3
	여수문화방송(주)		1	2				3
	안동문화방송(주)		1	2			1	4
	원주문화방송(주)	1	1	2				4
	(주)엠비씨충북		2	4				6
	포항문화방송(주)		1	2				3
	(주)엠비씨강원영동	1	2	3	1	1		8
	(주)티비씨	1	1	1			1	4
	(주)광주방송	1	1	1			1	4
	(주)울산방송	1	1	1				3
	(주)전주방송		1	1				2
	(주)청주방송		1	1				2
	(주)지원방송	1	1	1			1	4
	(주)제주방송		1	1			1	3
라디오 (11개사)	(주)경인방송			1				1
	(재)기독교방송			17	1	1		19
	(재)극동방송			11	2	2		15
	(재)불교방송			8				8
	(재)가톨릭평화방송			5				5
	(재)원음방송			5				5
	(재)국제방송교류재단			1				1
	(재)부산영어방송재단			1				1
	(재)광주영어방송재단			1				1
	(재)국악방송			2				2
	(주)YTN 라디오			1				1
합 계		13	24	87	6	6	5	141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회 (11인)	심사위원장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사항 및 배점(안)

- (심사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 (배점)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방송평가는 40% 재허가 심사결과는 60% 반영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대분류)	텔레비전 (UHD/DTV)	라디오	DMB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100	100	100
계	1,100*	1,100*	1,100*

* 총점 1,10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기준

-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심사기준 보완 및 배점 확대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50점)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조정
- 세부평가방법 보완 등
 -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계획(‘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UHD 방송국 구축계획(‘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
 - 방송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기존 수익성·성장성 평가(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증가율)에 치중되어 있던 평가방법에 재무안전성 항목(자본 잠식률, 차입금 의존도 등)을 추가
 - 유사한 세부평가방법이 각 심사항목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세부평가방법 중복 제거(예 : 편성규약, 이사회운영, 방송프로그램 투자실적 등)

□ 심사 절차 개선

- (심사투명성 제고) 지상파 재허가시 방송사업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대국민 공개
- (심사 효율성 제고) 재허가 대상 방송국이 2개 이상인 경우(DTV, FM, 표준FM, AM, DMB, UHD), 재허가 신청서를 통합하고 매체 관련 사항*만을 심사
 - * DTV, FM, UHD 등을 동시에 재허가 받는 경우 공통으로 평가하되, 편성·기술적 사항 등은 별도 심사
- (종이 없는 심사 도입) 재허가 심사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를 도입하여 ESG(환경) 역량 강화

□ 재허가 여부 결정 등

- (재허가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허가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

※ 예외적으로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달라 방송국 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 부여

- (조건 부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 부과에서 제외

-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